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6년 02월 27일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

1. 조 례 명 :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2. 제안이유

○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, 위원회 의사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,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촉직 분야 다양화 (안 제3조제3항)
- 나. 필요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개선 (안 제6조제3항)
- 다. 타 조례 등에 맞춰 조문 제목 수정 (안 제9조)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26년 03월 04일

나. 제출사항

-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제출처 :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

- 주소 : (30151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
- FAX : (044) 300-7219 / E-mail : hocandy@korea.kr

라. 문의처 : (044) 300-7313

붙임 :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 일
부개정조례안. 1부.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.

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촉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학교체육·생활체육·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되, 위촉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 중 “세종시교육감”을 “교육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3분의 2이상”을 “과반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통보하여야”를 “통보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작성·비치하여야”를 “작성·비치해야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배제하여야”를 “배제해야”로 하고, 같은

조 제2항 중 “관계인”을 “관계인(위원, 간사 또는 안건 관련 참고인 등을 포함한다)”으로, “회피하여야”를 “회피해야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수당 등의 지급)”을 “(수당 및 여비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<u>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</u>으로 구성한다. <후단 신설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위원 중 학교체육 부문 관계자는 교육감이 임명하고, 생활체육·전문체육 부문은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부패 전력이 없어야 하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<p>제6조(회의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.</u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세종시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</u>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위원</u>----- ----- -----<u>. 이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위촉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학교체육·생활체육·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되, 위촉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.</u>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교육감</u>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, 출석 위원, 심의 안건·내용, 기타 발언 내용이나 주요 요지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·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,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당 등의 지급) (생략)

③ -----

----- 과반수 -----
-----.

④ -----
----- 통보해야 -----
-----.

⑤ -----

----- 작성 -----
----- ·비치해야 -----.

제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-----

----- 배제해야 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관계인(위원, 간사 또는 안건 관련 참고인 등을 포함한다) -----
----- 회피해야 -----.

제9조(수당 및 여비)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☑ 학교체육진흥법

제16조(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)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, 시·도 및 시·도교육청과 시·군·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. <신설 2016. 2. 3.>

④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,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6. 2. 3.>

[붙임 2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제3조제4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이 현 정

현행조례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(중등교육과), 044-320-2243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4.5.20., 2022.2.21.>

제2조(기능)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4.5.20.>

1.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
2. 학생·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·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3.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
4. 학교 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
5.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(소년)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
6.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학교체육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중등교육과장,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.<개정 2014.5.20., 2018.8.10., 2019.7.10., 2024.6.28.>

③ 위원 중 학교체육 부문 관계자는 교육감이 임명하고, 생활체육·전문체육 부문은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부패 전력이 없어야 하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5.20.>

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.<개정 2014.5.20., 2018.8.10., 2019.7.10., 2024.6.28.>

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개정 2014.5.20.>

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의 학교체육담당 장학사로 한다.

제4조(결격사유) 삭제<2016.8.10.>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.

1.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
2. 세종시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, 출석 위원, 심의 안건·내용, 기타 발언 내용이나 주요 요지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신설 2014.5.20.>

제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안건 심의·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
1.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
2. 위원이 속한 기관·법인·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
3.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

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,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
[제목개정 2014.5.20.]

제7조의2(위원의 해촉)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신설 2016.8.10.>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제8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·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,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9조(수당 등의 지급)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8.8.10., 2021.4.12.>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2453호,2024.6.28>(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